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 시, 총포류(폭발물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해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 취득이 필수임. 이에 따라, 임용기준에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반영하여 부적격자 채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소형항공기 등 좁은 공간에서 방호복 착용 시, 움직임 제한으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장규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폭발물처리요원 임용기준(결격사유) 개선(안 제5조)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총포류 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반영하여 임무 부적격자의 채용 방지 및 원활한 폭발물등의 처리 임무 수행

나. 방호(폭)복 착용기준 개선(안 제21조)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방호복 착용이 필수이나, 공간 협소로 방호복 착용 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최소 보호장비(방탄조끼·헬멧)만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폭발물처리 시, 안전조치 개선(안 제25조)

폭발물 폭파 시, 안전시설 등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 이격을 유지해야 하나, 소규모 공항으로 담벼락 등 구조물과 100m 이상 이격이 어려운 경우 차단벽 추가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 마련

라. 운영상 미비점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개선(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1조, 별표(1, 6))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반 명칭 변경(합동조사반→합동조사팀), 폭발물 처리 책임 한계(폭발물 안전한 장소 운반 후 군·경 인계→폭발물 판독 후 인계) 명확화, 폭약 탐지기 성능기준(10초 이내 분석) 및 보호구 구입 시 인정 가능한 규격기준(인증기준) 확대(1→4개) 등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항공보안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예규안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합동조사반”이란”을 ““합동조사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폭발물처리요원,”을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폭발물처리요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항공보안법」 또는 다른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제2항 중 “합동조사반에”를 “합동조사팀에”로, “합동조사반의”를 “합동조사팀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이외의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여 군 등 관계기관의”를 “폭발물등을 판독하여 현장을 군·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합동조사반의 결정으로”를 “합동조사팀의 결정으로 폭발물등을 안전한 장소로 운반 또는,”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항공경비요원”을 “항공경비요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요원”을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요원”을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합동조사반”을 “합동조사팀”으로 한다.

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방폭복이나 방호복을 착용하고 폭발물등의 처리나 운반이 제한되는 경우 방탄조끼 및 헬멧 등 최소 방호장비만 착용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합동조사반”을 “합동조사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규모 공항으로서 공항시설 및 담벼락 등 구조물과 100m 이상 이격이 어려운 경우 차단벽 추가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후 폭파·제거할 수 있다.

제31조 중 “2022년 6월 9일”을 “2025년 6월 9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1) 중 “TNT, C4”를 “TNT”로, “되어야”를 “되어야 하며, 폭발물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1) 중 “NFPA Level A”를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8의2에 따른 ‘보호의 성능기준 2형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Level B’, 미국 환경보호청의 ‘EPA Level B’, 유럽의 ‘CE 인증 Type 2’ 이상의 규격 중 1개 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2) 및 3)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가목4)를 2)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 <u>합동조사반</u> ”이란 공항 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항공보안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폭발물등에 대한 합동조사 기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합동조사팀</u> ”이란 ----- ----- ----- -----.
제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임무) ① (생 략)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등을 발견한 경우 <u>폭발물처리요원</u> 외의 사람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피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폭발물처리요원</u>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폭발물처리요원 임용기준)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폭발물처리요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5조(폭발물처리요원 임용기준) ----- ----- ----- ----- -----.

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31조(유효기간)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다만, 소규모 공항으로서 공항 시설 및 담벼락 등 구조물과 100m 이상 이격이 어려운 경우 차단벽 추가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후 폭파·제거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효기간) -----

-- 2025년 6월 9일-----
-----.